

2 개정조문

개정 전	개정 후
제125조(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·납부) ① · ② (생 략) ③ 법 제128조제3항에서 “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”이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<u>연세액</u> 을,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,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<u>분할납부기한</u>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<u>세액</u> 을 말한다.	제125조(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·납부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법 제128조제3항에서 “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”이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<u>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</u> 을,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,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<u>분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</u> 을 말한다.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